법률과 관련된 검색광고 주요 검수기준

작성자: 오승협

NAVER

목차

1. 네이버 검색광고 검수

2. 검색광고 관련 법령

3. 허위/과장성 표현

4. 신고/등록/인허가

5. 광고 사전심의

6. 표시 규정

7.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NAVER

1. 네이버 검색광고 검수

NAVER

검수란?

✓ 네이버 검색광고란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를 연계하여 광고매체 이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인터넷 광고

✓ 검수란 등록된 검색광고의 키워드, 제목, 설명, 웹사이트가 네이버 검색광고의 광고운영정책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과정



✓ 검색 이용자의 클릭 유입



✓ 광고 매체의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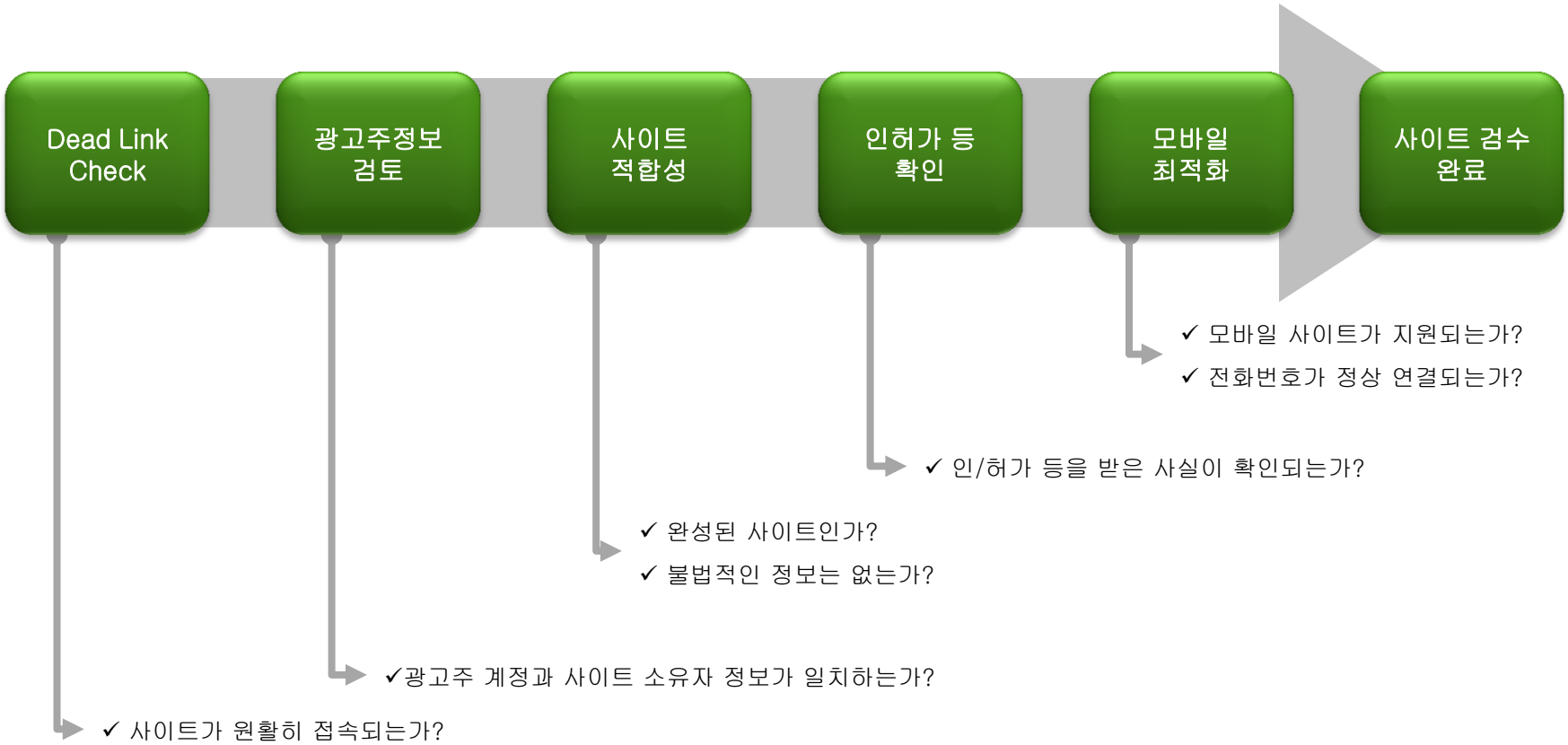
✓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NAVER

사이트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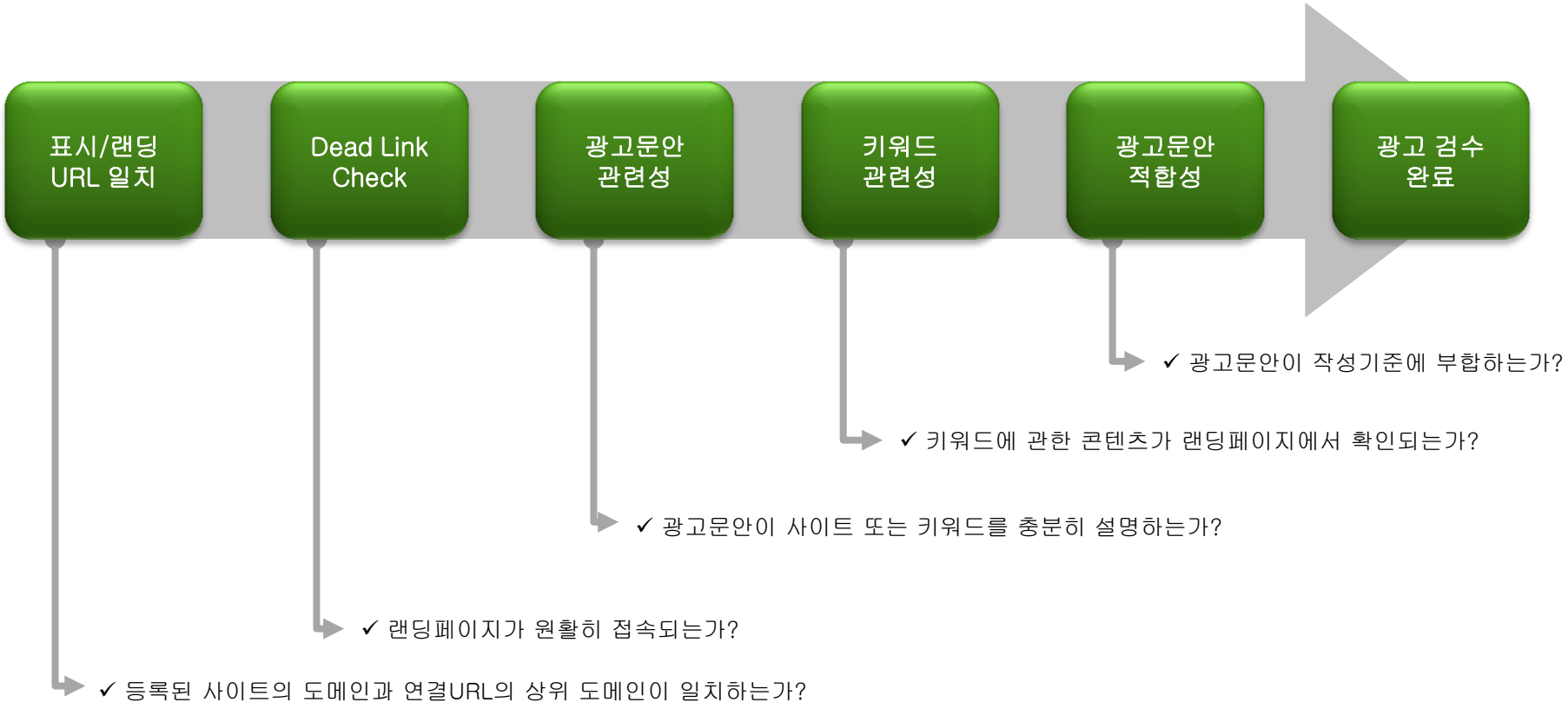
✓ “사이트검수”는 광고를 등록한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게재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 “사이트검수” 과정에서는 1) 불법 정보 제공 여부, 2) 특정 업의 영위 자격, 3) 기타 당사 정책 부합 여부 등을 확인



광고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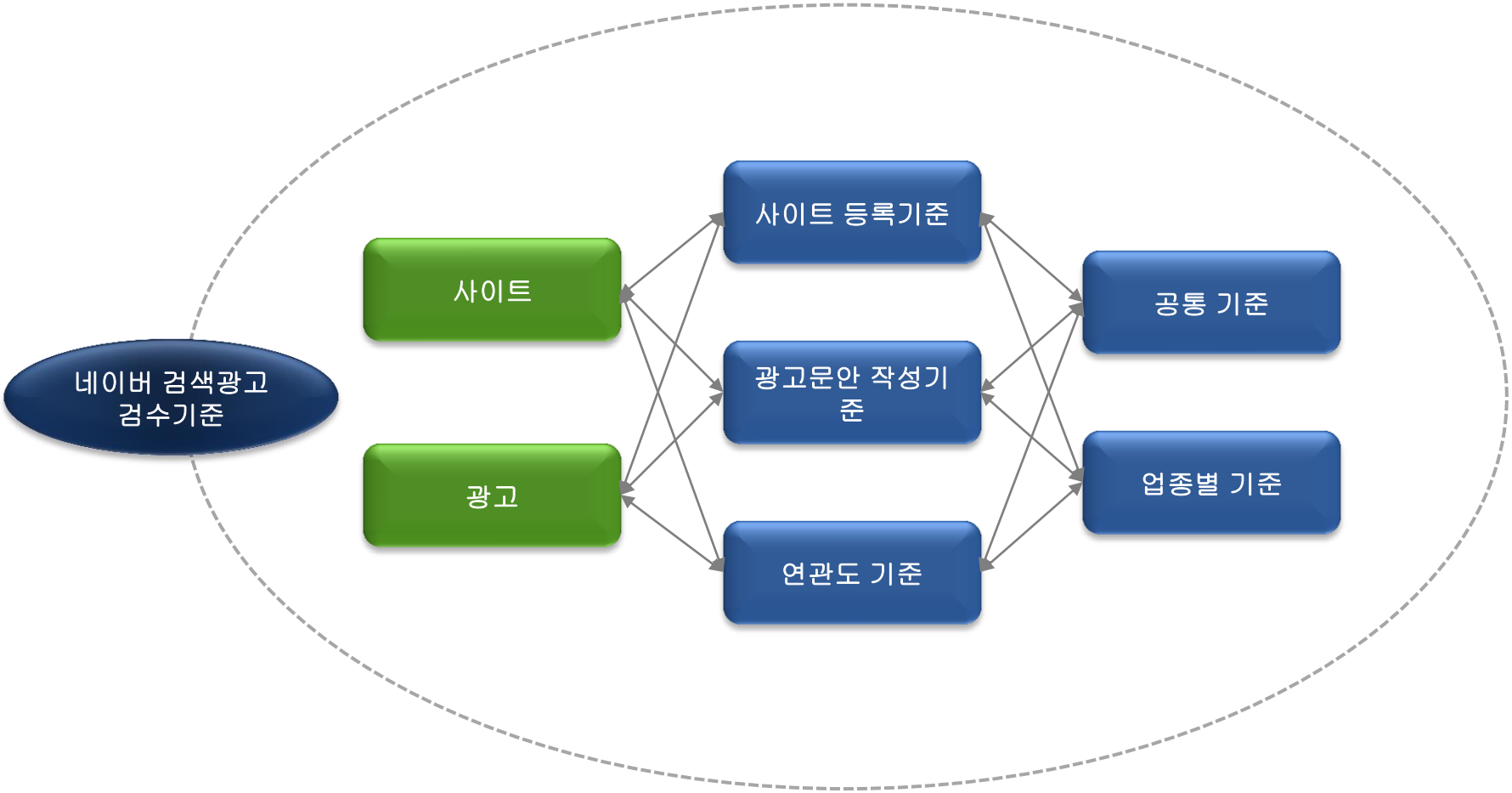
✓ “광고검수”는 “광고문안 검수”와 “연관도 검수”로 구성
✓ “광고문안 검수”는 광고문안에 기재한 사항들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 “연관도 검수”는 광고게재 키워드 및 광고문안의 광고 랜딩페이지와의 관련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



NAVER

검수기준

✓ 네이버 검색광고 검수기준은 적정한 광고품질을 담보하고 광고 관련 법적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검수기준들로 구성



NAVER

2. 검색광고 관련 법령

NAVER

검색광고 관련 법령

✓ 광고 관련 일반 법령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검색광고 역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음

✓ 그 외에 특정 업태·업종 관련 다양한 법령이 있는데, 광고 대상의 업태·업종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음

일반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별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3. 허위/과장성 표현

NAVER

허위/과장성 광고 적발 사례



산업

공정위, 쿠팡 호주산 소갈비 허위광고 '적발'

데스크승인 2012.11.14 14:16:47

임현수 기자 | hslim@seoulfn.com

쿠팡, 하등급 소갈비세트 최상급으로 거짓 광고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인터넷몰 쿠팡이 저급 품질의 갈비세트를 최상급이라며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 등급에 속하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작년 8월 말 추석을 앞둔 시점에 인터넷몰(www.coupang.co.kr)을 통해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며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된 소갈비세트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로 이는 하위등급에 속한다.

허위/과장성 문구 기재 제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과장성 광고를 해서는 안됨
✓ 광고문안(제목, 설명 등)에는 허위/과장성 문구를 기재할 수 없음
✓ 허위/과장성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광고문안에 허위 문구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① 광고문안에 검색 이용자를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성 문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② 광고문안에 다른 사업자 또는 개인이나 다른 사이트를 비방하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민원서류 발급신청 대행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② 민원서류 발급신청 대행 사이트는 광고의 “제목”에 “민원24”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AVER

차별적 표현 기재의 제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과장성 광고를 해서는 안됨
✓ 광고문안(제목, 설명 등)에 차별적 표현을 기재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허위/과장성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차별적 표현 기재 관련 ① 관련 내용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기재된 문구가 허위, 과장 등의 사실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과장 등의 문구로 확인될 경우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차별적 표현** - 최상급 문구 - 공식, 독점, 총판, 유일 등 문구 - 순위, 점유율, 확률 문구 - 공인, 지정, 선정, 수상 등 문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AVER

사례_차별적 표현

유형	사례
최상급 문구	편입, 공무원시험 적중률 No1 영어교재, 무료동강 제공
독점, 총판 문구	스웨덴 명품가구 OOOOO 국내 독점 공급 업체, 오프라인 매장 운영 OOOO 토이 한국 총판, 엄선된 좋은 상품 초특가!
순위, 점유율 문구	OO닷컴 2012년 3월 3주차 국내여행 분야 1위 업체 OOOO 산정 2012년 상반기 온라인 남성의류 쇼핑몰 점유율 30%!
지정, 선정 문구	영국문화원 선정 우수 어학원! 100% 외국인 강사진, 7일간 무료체험 OO화재 지정 자동차 정비업체
공인문구	국가공인 1급속기사, 주주총회, 조합총회, 각종 총회, 세미나 회의록 속기
수상문구	소비자브랜드협회 선정 2012년 올해의 브랜드대상 수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업체, 폐기물 원스탑 처리 서비스 제공

4. 신고/등록/인허가

NAVER

미신고 통신판매업 업체 적발

통신판매업 미신고업체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6-26 12:02



통신판매업 미신고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NAVER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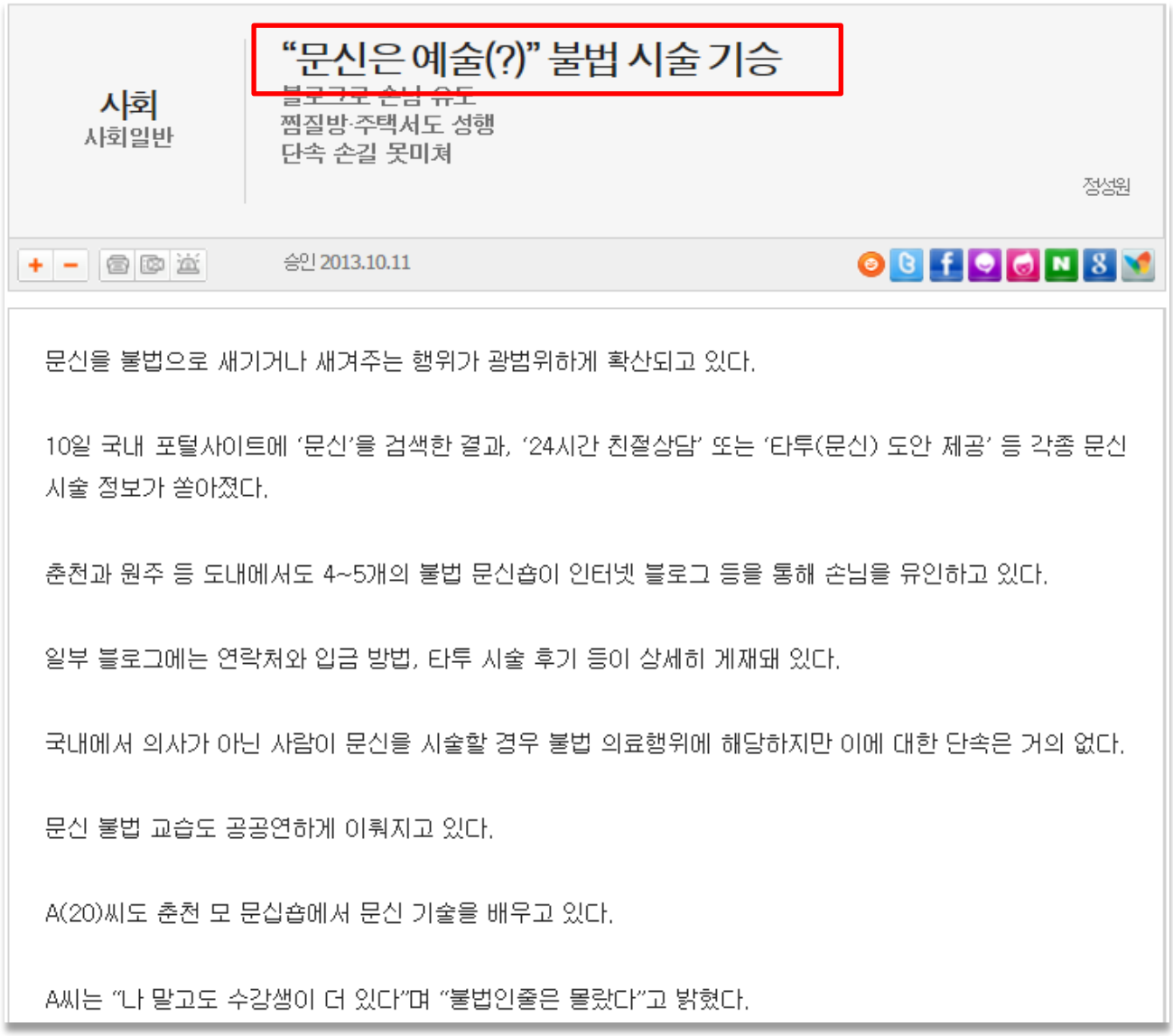
✓ 통신판매 사이트로 광고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1. 신고** ①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에 따라**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됨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NAVER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처벌 사례



사회
사회일반

“문신은 예술(?)” 불법 시술 기승

블로그로 손님 유도
찜질방·주택서도 성행
단속 손길 못미쳐

정성원

승인 2013.10.11

문신을 불법으로 새기거나 새겨주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10일 국내 포털사이트에 ‘문신’을 검색한 결과, ‘24시간 친절상담’ 또는 ‘타투(문신) 도안 제공’ 등 각종 문신 시술 정보가 쏟아졌다.

춘천과 원주 등 도내에서도 4~5개의 불법 문신숍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있다.

일부 블로그에는 연락처와 입금 방법, 타투 시술 후기 등이 상세히 게재돼 있다.

국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다.

문신 불법 교습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A(20)씨도 춘천 모 문신숍에서 문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

A씨는 “나 말고도 수강생이 더 있다”며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NAVER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함

✓ 의료기관 사이트로 광고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거나 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의료기관 사이트 등록기준 **1. 등록** ① 의료기관(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의원), 조산원, 요양병원 등) 사이트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거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88조(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대부업 피해 사례



연 이자 850%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4명 검거

최종수정 2013.08.09 23:23 기사입력 2013.08.09 09:07

사회문화부 왕성상

대전 서부경찰서,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서민금융 119서비스' 통해 피해상황 파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에서 최고 850%의 연간이자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며 이처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김모(34, 남)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이 필요한 피해자 A(38, 여)씨에게 2010년 8월3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100만~550만원씩 25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려주며 연 149.6~850.8%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NAVER

대부업 등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만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광고할 수 있음
✓ 대부업 사이트로 광고하는 경우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 **1. 등록** ① 대부업 사이트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대부업 사이트는 대부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부업 등록증은 서류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의 것을 인정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NAVER

5. 광고 사전심의

NAVER

의료광고 사전심의

✓ 의료 검색광고는 『의료법』에 따른 법정사전심의 대상임

✓ 해당 광고들은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필하였는지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의료기관 사이트 등록기준 ①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 해당되는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광고의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제89조(벌칙)**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표시 규정

NAVER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시

✓ 통신판매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통신판매 사이트로 광고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2. 필수기재사항** ① 통신판매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 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NAVER

대부업자의 대부조건 표시

✓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대부업 사이트로 광고하는 경우 대부조건 등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대부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법률 근거
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 **2. 필수기재사항** ① 대부업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부업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6) 연락처 7) 대부이자율(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8)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등 8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NAVER

7.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NAVER

온라인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_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의 적용 대상은 재화를 통신판매하는 사이트임
- ✓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광고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함
-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1. 신고 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필수 기재 및 구비사항 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NAVER

온라인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_구매안전 서비스 관련

✓ 선지급식 온라인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를 구비해야 함

✓ 선지급식 온라인쇼핑몰은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여부를 표시해야 함

✓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허위로 표시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2. 필수 기재 및 구비사항 ② 선불식(선지급식) 온라인 쇼핑몰은 신용카드와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에스크로, 채무지급보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시험주문을 통해 신용카드와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Thank you.

NAVER